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5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6) 상정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7)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가. 제안이유

- 현재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간으로는 보육시설의 현황 파악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짧은 기간이라는 부천시보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 설치연도 및 개소일이 각기 다르고 위탁기간 만료일 또한 각기 다름으로 인하여 위탁자 선정에 따른 보육위원회의 잦은 개최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없애고자 위탁기간 만료일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안 제8조)
 - 현행 : 2년 → 개정 : 3년
- 위탁기간 만료일의 조정(안 제8조)
 - 현행 :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개정 :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
| ○ 개정조례안 제8조 일부내용과 부칙 제2항의 내용이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 ○ 안 제8조는 새로 신설되는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부칙 제2항은 2000년 6월까지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적용 사항임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2년의 기간 임기로는 시설장들이 업무파악과 운영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다고 파악될 때쯤 임기가 끝나게 되므로 3년으로 연장하여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는 면도 있지만
- 기간을 연장해 줄 때 장기적으로 시설장을 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한다"라는 수정안에 찬성.

나. 반대로론

- 기간 연장건에 대하여는 2대 의회 때도 심도있게 토론을 벌였던 사안으로 기간연장은 불합리한 처사임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부천시 보육사업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일단 계류시켰다가 공포함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과
- 임기연장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번호 | 관련 제24호 |
| 의결년월일 | 98. 9. 22 (제64회) |

제출년월일 : 1998. 9. 19

제 출 자 : 총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이유는 현황 파악 및 어린이들의 습성 성향분석을 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파악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고 있어 일을 의욕적으로 하여 보겠다고 할 때면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하여 공감은 가나
- 시설장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다음 해에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위탁선정기준에서 기존 운영자가 위탁신청을 다시 낼 때는 1회에 한하여 2점이란 가산점을 주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4년 동안 연장 운영에 문제점이 없음을 감안할 때
-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3년으로 개정해 준다면 장기운영으로 오는 폐단이 여러 가지로 더욱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결적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3년을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 심사로 한다(안 제8조)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위탁기관)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를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8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고..... |

[수정안포함]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탁기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고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